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688호
2. 발 의 자 : 홍국표 의원(찬성자 9명)
3. 발의일자 : 2026년 5월 26일
4. 회부일자 : 2026년 5월 27일

II 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2025년부터 ‘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’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·조직화하고,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재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‘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’의 추진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- 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권을 발굴하고 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나. 안 제4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의 예외를 규정함(안 제12조 후단 신설).

Ⅳ 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‘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됨.

2.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개요

-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구획화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방문유도 행사 등 공동마케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’을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음.
- 현행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통시장법”)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, 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사업 참여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, 일부 상권은 상권 구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인조직이 미비하여 지정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행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5년에는 상권 분석 및 상인조직 구성 등을 지원하여 11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자치구를 통해 신규로 지정되었고, 60개소에 대해서는 공동마케팅 등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음.
- 현재 동 사업은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¹⁾와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²⁾ 등을

근거로 삼아 추진되고 있음.

- 그러나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와 같이 이미 제도권 내로 편입된 상권을 지원하고 있고, 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조례”는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‘상권’에 대한 지원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이에 2026년도 본예산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획경제위원회 검토 보고³⁾⁴⁾에서는 동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3.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

- 동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권 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지원대상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4조(지원사업) ①·② (생략) <신설>	제4조(지원사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상권

- 1)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지원사업)
 -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7.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2)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3.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,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
- 3)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, 「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」 (2025. 12.), p.197
- 4)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, 「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」 (2026. 4.), p.49

제12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하 다. <후단 신설>	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제12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.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--	---

-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.
- 다만 서울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체계와의 정합성, 지원범위의 불명확성 및 지원대상 예외 인정에 따른 대표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먼저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살펴보면, 전통시장법상 지원대상이 전통 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,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상권에 대해서도 동 조례 내에 지원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.
-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전체를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,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상인조직화 및 상권 구획 설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, 최종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는 사안임.
-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법상 지원대상을 실질적 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는

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- 다음으로 서울시는 안 제4조제3항의 사업 범위가 불명확하고, 제12조 후단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예외 인정이 대표성 논란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이에 대해서는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에서 ‘상권 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’의 범위를 ‘상권 조사·발굴, 컨설팅, 상인조직화, 구역설정 검토·조정 및 행정절차 지원’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- 다만 동 사업은 대행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으로, 제4조에 따른 직접 지원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, 이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.
- 이와 같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경우 제12조 후단의 지원대상 예외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감소하므로, 해당 규정의 삭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이러한 수정은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서울시가 제기한 사업 범위의 불명확성 및 지원대상 예외 인정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.

< 수정의견 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4조(지원사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상권	제4조(지원사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<u>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u>	
<u><신 설></u>	제4조의2(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) 시장은 골 <u>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상권 조사·발굴,</u> <u>컨설팅, 상인조직화, 구역설정 검토·조정 및</u> <u>행정절차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
제12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. <u>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</u>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	제12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<u><후단 삭제></u>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 혜 진	02-2180-8057